

##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운용 모범규준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 한다)가 COFIX 산출·공시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COFIX)** 이 모범규준에서 COFIX는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하며,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및 단기 COFIX로 구분한다.

**제3조(정보제공은행)** ① COFIX산출을 위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은행(이하 “정보제공은행”이라 한다)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으로 한다.

② 은행연합회는 은행간 인수·합병이나, 은행의 대출자산 규모, 자금조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은행을 새롭게 편입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정보제공은행은 정보 제공담당자(부서장, 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

**제4조(COFIX 산출대상자금)** ① "COFIX 산출대상자금"이란 COFIX 산출시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자금을 말한다.

②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및 단기 COFIX 산출대상자금은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제출기준에 따른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말한다. 다만, 단기 COFIX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계약만기가 3개월이거나 89일 내지 92일인 자금(만기를 월과 일로 함께 정한 경우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 또는 89일 내지 92일 해당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만기가 이연됨에 따라 계약만기가 3개월 또는 9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포함

2. 계약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주기로 약정금리가 재산정되고 매 주기 경과시 직전 주기까지의 약정금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자금(제5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해서는 약정금리 재산정시점에 해당 자금이 신규취급된 것으로 본다)

③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은 <붙임1>의 제출기준에 따른 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원화양도성예금증서, 원화차입금,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원화발행금융채권,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을 말한다.

**제5조(정보 제공)** ① 정보제공은행은 <붙임2>에 따라 계산한 다음 각 호의 기초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월중 신규취급액 합계 및 가중평균금리
  2.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월말 잔액 합계 및 가중평균금리
  3.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 중 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원화양도성예금증서, 원화차입금,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원화발행금융채권의 월말 잔액 합계(이하 “일반자금”의 월말 잔액 합계라 한다) 및 가중평균금리와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의 월말 잔액 합계(이하 “결제성자금”의 월말 잔액 합계라 한다) 및 가중평균금리
  4.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시 결제성자금 반영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출금 잔액 합계
  5. 단기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주간 신규취급액 합계 및 가중평균금리(재무상태표 산정기일 기준)
- ② 정보제공은행은 제1항의 기초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세부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한다.

1.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상의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을 위한 정보
  2. <붙임1>의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을 위한 정보
  3. 한국은행 주간금리조사표 상의 단기 COFIX 산출을 위한 정보
- ③ 정보제공은행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초정보 중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월중 신규취급액 합계, 월말 잔액 합계, 일반자금의 월말 잔액 합계, 결제성자금의 월말 잔액 합계, 대출금 잔액 합계, 주간 신규취급액 합계는 백만원 단위(백만원 미만은 절사)로 제공하며, 각각에 해당하는 기초정보의 금리 단위는 연 %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로 제공한다.

**제6조(COFIX 산출)** ① COFIX는 제5조의 정보를 근거로 <붙임3>의 산출 공식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및 단기 COFIX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COFIX 단위는 연 %로 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산출한다.

**제7조(정보제공 및 공시절차)** ① 정보제공은행은 제5조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은행연합회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정보 : 해당 월의 익월 14일(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15시
  2. 단기 COFIX : 해당 주의 다음주 제2영업일 17시
- ② 정보제공은행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정보를 COFIX 공시일 11시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③ 은행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은행에게 검증을 요청하며, 해당 은행은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통보한 시간 내에 이를 검증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1. 은행연합회가 제5조 제2항의 세부정보를 근거로 제5조 제1항의 기초정보를 은행별로 산출하고, 이를 정보제공은행이 제공한 제5조 제1항의 기초정보와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

2. 정보제공은행이 제출한 정보가 <붙임4>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COFIX를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 : 해당 월의 익월 15일(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5시

2. 단기 COFIX : 해당 주의 다음 주 제3영업일 15시

⑤ 특정한 주의 영업일이 2일 이하인 경우, 그 전주 및 해당 주 조달분에 대한 단기 COFIX는 각각 산출·공시하지 않고 합산기준으로 그 다음 주에 산출·공시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또는 시점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

⑦ 공시된 COFIX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은행연합회는 해당 COFIX를 수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COFIX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시된 COFIX가 정확하게 산출하였을 경우보다 낮게 공시된 경우

2. 공시된 COFIX가 정확하게 산출하였을 경우보다 높게 공시된 경우로서 그 차이가 정확하게 산출한 COFIX의 1백분의 1 또는 5bp 중 작은 수치 이내인 경우

3. 공시된 COFIX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공시일 이후 2년이 초과하여 발견한 경우

⑧ COFIX 정보제공 및 공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붙임1> 내지 <붙임5>에 따른다.

**제8조(COFIX 관리위원회)** ① COFIX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COFIX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금융관련 연구·감독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OFIX 운용 모범기준 개정사항에 관한 심의

2. COFIX 수정공시 기준 등 수정공시 관련 심의

3. COFIX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방안 권고

#### 4. 기타 COFIX 운영에 관한 권고 및 자문 등

**제9조(신의성실의무)** 정보제공은행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연합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COFIX가 정확히 산출되도록 성실히 관리하는 등 정보제공은행과 은행연합회는 COFIX의 산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담합행위 등 금지)**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COFIX 산출, 공시 및 검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여타 은행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제공은행 간에도 정보를 상호 교환·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면책)** ①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이에 근거하여 발표되는 COFIX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제공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② 은행연합회는 COFIX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COFIX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부 칙('10. 1. 21.)

이 모범규준은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2. 3.)

이 모범규준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3. 6.)

이 모범규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6. 15.)

이 모범규준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1. 9.)

이 모범규준은 201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7. 5.)

이 모범규준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 및 잔액·금리 산출 기준

1. 정보 제출 양식

구분	CODE	계정과목	금리	잔액	분류	
1. 일반자금	LA2000K	저축성예금			대표정보	
	LA2010K	정기예금			세부정보	
	LA20200	정기적금			세부정보	
	LA20300	목돈마련저축			세부정보	
	LA2040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세부정보	
	LA20500	비거주자원화예금(저축성예금)			세부정보	
	LA21400	비거주자자유원예금(저축성예금)			세부정보	
	LA20700	가계우대정기적금			세부정보	
	LA21000	근로자장기저축			세부정보	
	LA21100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부정보	
	LA21200	가계장기저축			세부정보	
	LA21300	근로자우대저축			세부정보	
	LA29900	기타저축성예금			세부정보	
	LA30000	수입부금			대표정보	
	LA40000	주택부금			대표정보	
	LC0000W	원화양도성예금증서			대표정보	
	LC1000W	은행간CD(원화)			세부정보	
	LC2000W	대고객CD(원화)			세부정보	
	LP00000	원화차입금			대표정보	
	LK0000W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대표정보	
	LM00000	매출어음			대표정보	
	LV1000K	원화발행금융채권			대표정보	
	LV1100K	일반사채			세부정보	
	LV1200K	전환사채			세부정보	
	LV1300K	신주인수권부사채			세부정보	
	LV1900K	기타금융채권			세부정보	
	2. 결제성자금	LA10000	요구불예금			대표정보
		LA10100	당좌예금			세부정보
		LA10200	가계당좌예금			세부정보
		LA10300	보통예금			세부정보
		LA10400	별단예금			세부정보
LA10500		공금예금			세부정보	
LA10600		비거주자원화예금(요구불예금)			세부정보	
LA10700		비거주자자유원예금(요구불예금)			세부정보	
LA10800		국고예금			세부정보	
LA19900		기타요구불예금			세부정보	
LA20600		저축예금			대표정보	
LA20900		기업자유예금			대표정보	
3. 대출금		ZA999999M	기업자금대출			대표정보
		ZB999999M	가계자금대출			대표정보

## 2. 잔액 작성 요령

### (1) 공통

- 잔액은 월말 잔액 작성
- 공시일 이전에 (가)결산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공시 후 (가)결산보정 등에 따른 변경분은 소급적용하지 않음
- 엑셀에 기재하는 대표정보와 세부정보는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작성
- 엑셀에 기재하는 대표정보와 세부정보는 셀에 수식을 활용하지 않고 수치만 입력

### (2) 세부 작성방법

- 다음 대표정보는 하위 세부정보의 합계 작성
  - 저축성예금(LA2000K)
  - 원화양도성예금증서(LC0000W)
  - 원화발행금융채권(LV1000K)
  - 요구불예금(LA10000)
- 정기예금(LA2010K)의 경우 금감원 업무보고서의 해당 코드를 가진 계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잔액을 산출해 작성하되, ELD 등 파생상품관련 정기예금은 제외
  - 복합정기예금(일반 정기예금과 파생관련 정기예금이 합쳐진 상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 부분만이 포함
- 다음 정보는 금감원 업무보고서(B2101)상 해당 코드를 가진 계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잔액을 산출해 작성
  - 정기적금(LA20200)
  - 목돈마련저축(LA20300)
  - 근로자주택마련저축(LA20400)
  - 비거주자원화예금(LA20500)
  - 비거주자자유원예금(LA21400)
  - 가계우대정기적금(LA20700)
  - 근로자장기저축(LA21000)

- 장기주택마련저축(LA21100)
- 가계장기저축(LA21200)
- 근로자우대저축(LA21300)
- 기타저축성예금(LA29900)
- 수입부금(LA30000)
- 주택부금(LA40000)
- 원화차입금(LP00000)
- 매출어음(LM00000)
- 당좌예금(LA10100)
- 가계당좌예금(LA10200)
- 보통예금(LA10300)
- 별단예금(LA10400)
- 공금예금(LA10500)
- 비거주자원화예금(LA10600)
- 비거주자자유원예금(LA10700)
- 국고예금(LA10800)
- 기타요구불예금(LA19900)
- 저축예금(LA20600)
- 기업자유예금(LA20900)

○ 다음 정보는 액면가 기준 월말 잔액을 기재

- 일반사채(LV1100K)
- 전환사채(LV1200K)
- 신주인수권부사채(LV1300K)
- 기타금융채권(LV1900K)
- 은행간CD(LC1000W)
- 대고객CD(LC2000W)

○ 다음 정보는 금감원 업무보고서(B2101)에 따라 분류된 계정 잔액 중 원화상품의 잔액만을 작성

-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LK0000W)

○ 다음 계정은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상의 계정과 동일한 코드의 계정 잔액을 기재

- 기업자금대출(ZA999999M)
- 가계자금대출(ZB999999M)

### 3. 금리 작성 요령

#### (1) 공통

- 잔액기준 금리는 월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
- 공시일 이전에 (가)결산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공시 후 (가)결산보정 등에 따른 변경분은 소급적용하지 않음
-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건별 실행금리} \times \text{건별 월말 잔액})}{\sum (\text{건별 월말 잔액})}$$
- 모든 금리는 연리이며, 월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엑셀에 기재하는 대표정보와 세부정보의 금리는 셀에 수식을 활용하지 않고 수치만 입력
- 엑셀에 기재하는 대표정보와 세부정보의 금리는 소수점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기재
- 만기 이후 해약하지 않고 재예치도 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상품에 적용되는 만기후 금리를 적용
- 이자 환급 등으로 해당월 잔액기준금리에 마이너스금리(-)가 산출되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가중평균금리 산출

#### (2) 세부 작성방법

- 다음 상품은 하위 상품의 가중평균금리 기재
  - 저축성예금(LA2000K)
  - 원화양도성예금증서(LC0000W)
  - 원화발행금융채권(LV1000K)
  - 요구불예금(LA10000)
-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상품(예 : 원화양도성예금증서, 매출어음 등)의 경우 할인율



을 연수익률로 환산

○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금융채권은 발행수익률 적용

○ 다음 상품은 매월말 가결산시 작성하는 이문율\* 적용

\* 이문율 = [(손익계산서상 월중지급이자총액/월중평균잔액)]×365/(월중일수)

－ 원화차입금

－ 요구불예금(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공금예금, 국고예금, 기타요구불예금)

－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비거주자원화예금 및 비거주자자유원예금으로 분류되는 상품 중 결제성자금 성격인 상품(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붙임2>

### 기초정보 산출 공식

####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초정보

- 월중 신규취급액 =  $\sum$  (월중 상품별 신규취급액)
- 월중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상품별 적용금리} \times \text{월중 상품별 신규취급액})}{\sum (\text{월중 상품별 신규취급액})}$$

#### 2. 잔액기준 COFIX 기초정보

- 월말 잔액 =  $\sum$  (상품별 월말잔액)
-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상품별 적용금리} \times \text{상품별 월말 잔액})}{\sum (\text{상품별 월말 잔액})}$$

#### 3. 신 잔액기준 COFIX 기초정보

- 일반자금 월말 잔액 =  $\sum$  (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원화양도성예금증서, 원화차입금,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원화발행금융채권)
- 일반자금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일반자금 상품별 적용금리} \times \text{일반자금 상품별 월말 잔액})}{\text{일반자금 월말 잔액}}$$
- 결제성자금 월말 잔액 =  $\sum$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 결제성자금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결제성자금 상품별 적용금리} \times \text{결제성자금 상품별 월말 잔액})}{\text{결제성자금 월말 잔액}}$$
- 대출금 월말 잔액 합계 =  $\sum$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 4. 단기 COFIX 기초정보

- 주간 신규취급금액 =  $\sum$  (주간 상품별 신규취급액)
- 주간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상품별 적용금리} \times \text{주간 상품별 신규취급액})}{\sum (\text{주간 상품별 신규취급액})}$$

<붙임3>

COFIX 산출 공식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frac{\sum (\text{각행 월중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금리} \times \text{각행 월중 신규취급액})}{\sum (\text{각행 월중 신규취급액})}$$

2. 잔액기준 COFIX =

$$\frac{\sum (\text{각행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times \text{각행 월말 잔액})}{\sum (\text{각행 월말 잔액})}$$

3. 신 잔액기준 COFIX =

$$\frac{[\text{일반자금 가중평균금리}^{1)} \times \sum (\text{각행 일반자금 잔액})] + [\text{결제성자금 가중평균금리}^{2)} \times (\text{결제성자금 반영액}^{3)})]}{\sum (\text{각행 일반자금 잔액}) + \text{결제성자금 반영액}}$$

$$1) \text{ 일반자금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각행 월말 일반자금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times \text{각행 일반자금 월말 잔액})}{\sum (\text{각행 일반자금 월말 잔액})}$$

$$2) \text{ 결제성자금 가중평균금리} = \frac{\sum (\text{각행 월말 결제성자금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times \text{각행 결제성자금 월말 잔액})}{\sum (\text{각행 결제성자금 월말 잔액})}$$

$$3) \text{ 결제성자금 반영액} = \sum (\text{각행 대출금 월말 잔액}) - \sum (\text{각행 일반자금 월말 잔액})$$

\* 단,  $\sum (\text{각행 대출금 월말 잔액})$ 이  $\sum (\text{각행 일반자금 월말 잔액})$ 보다 작을 경우 결제성자금 반영액은 0원으로 한다.

4. 단기 COFIX =

$$\frac{\sum (\text{각행 주간 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 \times \text{각행 주간 상품별 신규취급액})}{\sum (\text{각행 주간 신규취급액})}$$

<붙임4>

계정과목별 검증 요청 기준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정보를 활용해 검증

(1) 신규취급액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신규취급액이 직전기에 제출된 신규취급액과 같을 경우
- ②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신규취급액과 비교해 변동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신규취급액	:	25% 이상
나. 세부정보 신규취급액	:	50% 이상

(2) 신규취급금리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금리가 직전기에 제출된 금리와 같을 경우
- ② 신규취급액이 0원이 아닌 계정과목의 금리가 0%인 경우
- ③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금리와 비교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금리	:	15bp 이상
나. 세부정보 중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	:	15bp 이상
다. 나머지 세부정보 금리	:	30bp 이상

2. 잔액기준 COFIX :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정보를 활용해 검증

(1) 잔액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잔액이 직전기에 제출된 잔액과 같을 경우
- ②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잔액과 비교해 변동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잔액	:	5% 이상
나. 세부정보 잔액	:	10% 이상

(2) 잔액금리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금리가 직전기에 제출된 금리와 같을 경우
- ② 잔액이 0원이 아닌 계정과목의 금리가 0%인 경우
- ③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금리와 비교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금리	:	10bp 이상
나. 세부정보 중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	:	15bp 이상
다. 나머지 세부정보 금리	:	30bp 이상

3. 신 잔액기준 COFIX : <붙임1> 제출 양식을 통해 검증

(1) 잔액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잔액이 직전기에 제출된 잔액과 같을 경우
- ②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잔액과 비교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잔액	:	5% 이상
나. 대표정보 잔액	:	10% 이상
다. 세부정보 잔액	:	10% 이상

(2) 잔액금리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금리가 직전기에 제출된 금리와 같을 경우
- ② 잔액이 0원이 아닌 계정과목의 금리가 0%인 경우
- ③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금리와 비교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금리	:	10bp 이상
나. 대표정보 금리	:	15bp 이상
다. 나머지 세부정보 금리	:	30bp 이상

4. 단기 COFIX : 한국은행 주간금리조사표 정보를 활용해 검증

(1) 신규취급액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신규취급액이 직전기에 제출된 신규취급액과 같을 경우
- ②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잔액과 비교해 변동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신규취급액 : 50% 이상  
나. 세부정보 신규취급액 : 70% 이상

(2) 신규취급금리 검증 기준

- ① 계정과목별 금리가 직전기에 제출된 금리와 같을 경우
- ② 신규취급액이 0원이 아닌 계정과목의 금리가 0%인 경우
- ③ 직전기의 계정과목별 금리와 비교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을 경우

가. 기초정보 금리 : 30bp 이상  
나. 세부정보 금리 : 40bp 이상

<붙임5>

### COFIX 내부통제 표준절차

1. 정보제공은행은 COFIX 제출 부서와 검증 부서\*(한국은행 금리조사표 담당 부서, 금감원 업무보고서 담당 부서 등 유관부서 중에서 지정)를 분리
  - \* 예시 : COFIX 기초정보를 연합회에 제출하는 부서(팀)와,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담당 부서 또는 금감원 업무보고서 담당 부서 등 관련 유관부서(팀)을 분리
2. 정보제공은행은 COFIX 운용 모범기준에 따라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및 주간금리조사표, <붙임1>의 신 잔액기준 COFIX 정보 제출 양식을 기반으로 COFIX 기초정보\*를 산출하고, 그 내용의 정합성을 검증
  - \*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월중 신규취급액 및 가중평균금리
  - 2)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월말 잔액 및 가중평균금리
  - 3)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월말 잔액, 가중평균금리 및 대출금 잔액. 다만, 일반자금과 결제성자금의 월말 잔액과 가중평균금리를 각각 산출
  - 4) 단기 COFIX 산출대상자금의 주간 신규취급액 및 가중평균금리
3. COFIX 정보 제출 부서 실무자는 모범기준상 정보제출기한 전에 은행의 COFIX 검증 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COFIX 정보 입력시스템」을 통해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및 <붙임1>의 신 잔액기준 COFIX 제출양식도 확인
  - 가. 검증이 완료된 COFIX 기초정보
  - 나. 한국은행 제출 금리조사표상의 COFIX 산출을 위한 세부정보\*
    - \* 1) 한국은행 금리조사표상의 '1. 주요여수신 금리조사표' 자료와 동일자료 제출
    - 2) 한국은행 주간금리조사표상의 '1. 수신금리' 자료와 동일자료 제출
  - 다. <붙임1>의 신 잔액기준 COFIX 제출양식에 따른 대표정보 및 세부정보
4. COFIX 정보 제공 책임자는 「COFIX 정보 입력시스템」에서 실무자 입력내용의 정확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준법 감시 담당자의 COFIX 입력정보와 금리조사표 대조 후에 최종 내부보고(부서장 확인), COFIX 정보와 금리조사표를 COFIX 정보 제공 기한까지 은행연합회와 한국은행에 각각 제출하고, <붙임1>의 신 잔액기준 COFIX 제출양식은 은행연합회에만 제출
5. 은행연합회는 세부정보를 이용하여 COFIX 기초정보를 산출하고 은행이 입력한 COFIX 기초정보와 대조
6. 대조결과가 동일한 경우 해당 정보를 COFIX 기초정보로 확정
7. 대조결과가 상이하거나, COFIX 기초정보가 운용 모범기준상 재검증 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에게 해당 정보의 검증을 요청

8. 검증을 요청 받은 은행은 정보를 검증하여 필요시 내부보고 등을 거쳐 수정
9. 은행연합회는 확정된 COFIX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COFIX를 산출하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10. COFIX 공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사후 확인 실시
  - 가. 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 COFIX : 정보제공은행은 해당 COFIX가 공시된 월의 25일(25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함)에 한국은행에 최종 제출한 금리조사표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은행연합회는 제출받은 금리조사표와 공시된 COFIX를 비교
    - 차이 발생시 모범규준 제7조제7항에 따라 조치
  - 나. 신 잔액기준 COFIX : 정보제공은행은 해당 COFIX가 공시된 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B2101)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은행연합회는 제출받은 업무보고서 및 '가' 목에서 제출받은 한국은행 금리조사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붙임 1> 1. 정보 제출 양식' 상의 정보와 비교
    - \* <별표>에서 표시한 정보에 한함
- ※ 신 잔액기준 COFIX는 공시일 이전에 (가)결산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시하므로 공시일 이후에 작성하는 금감원 업무보고서 상의 잔액과 다를 수 있으며, 반올림 과정에서 단수차도 발생 가능. 따라서,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시 제출한 상품별 잔액 정보와 금감원 업무보고서 상의 잔액이 다를 경우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거나 (가)결산 보정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산출·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
11. 은행은 은행 내부 준법감시부 또는 감사부 등 독립된 부서에서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당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



<별표>

신 잔액기준 COFIX 산출대상 정보 중 사후 확인 대상

구분	CODE	계정과목	금리	잔액	
1. 일반자금	LA2000K	저축성예금			
	LA2010K	정기예금			
	LA20200	정기적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0300	목돈마련저축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040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0500	비거주자원화예금(저축성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1400	비거주자자유원예금(저축성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0700	가계우대정기적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1000	근로자장기저축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1100	장기주택마련저축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1200	가계장기저축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1300	근로자우대저축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9900	기타저축성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30000	수입부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40000	주택부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C0000W	원화양도성예금증서			
	LC1000W	은행간CD(원화)			
	LC2000W	대고객CD(원화)			
	LP00000	원화차입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K0000W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LM00000	매출어음		금감원 업무보고서	
	LV1000K	원화발행금융채권			
	LV1100K	일반사채			
	LV1200K	전환사채			
	LV1300K	신주인수권부사채			
	LV1900K	기타금융채권			
	2. 결제성자금	LA10000	요구불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100		당좌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200		가계당좌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300		보통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400		별단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500		공금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600		비거주자원화예금(요구불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700		비거주자자유원예금(요구불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0800		국고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19900		기타요구불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0600		저축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LA20900		기업자유예금		금감원 업무보고서	
3. 대출금		ZA999999M	기업자금대출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ZB999999M	가계자금대출		한국은행 금리조사표